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②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 -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별표2]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안)

I. 이 판정방법은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판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 판정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적용한다.

III. 이 판정에서 사용되는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육안판정이란, 별도의 기기분석 또는 시험 없이 제품의 상태만으로 등급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육안판정이 가능한 재질 · 구조의 경우 기기분석을 거치지 않고 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2. 기기분석이란 육안관정으로 등급평가가 어려울 경우 등급평가를 위해 재질·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육안관정에 의한 결과와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경우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IV. 판정방법

1. 포장재별의 구성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을 포장재별 재질·구조세부기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2.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판정한 재질·구조는 판정에서 제외한다.

3. 육안판정 가능으로 명시해놓은 경우 사진, 동영상, 실물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

4. 본 판정방법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외에도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이거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통해 재질·구조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판정방법 상 기기분석 결과와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둘 이상의 분석방법 상에서 분석결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판정방법 상에 기재되어 있는 판정방법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라.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V. 이 판정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포장과 법률

번호	용어	정의
1	합성수지	· 화학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플라스틱이라고도 하며,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유동(流動)에 따라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분류
2	잡자재	· 용기 등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술되는 형태로서 주로 대용량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등을 총칭
3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4	직접 인쇄	· 용기 등의 표면에 디자인 또는 표기사항 등을 직접 인쇄한 형태 - 유리병의 경우 스크린 인쇄방식을 이용하여 곡면(曲面)인 몸체에 특수 잉크로 인쇄한 후 가열하여 안료(顔料)를 유리 표면에 용착시키는 방법이 있음.
5	PVC 계열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염화폴리염화비닐(PVC-C),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 폴리염화비닐이 포함된 재질
6	복합재질	·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2. 종이팩

번호	용어	정의
1	첩합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는 것으로 부착과 동일한 의미임
2	첩합 알루미늄 박	· 비교적 얇은(0.006~0.03mm) 정도의 알루미늄박을 자외선 차단, 배리어성, 방습 및 열복합성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종이, 셀로판, 플라스틱 필름 등과 복합한 재료의 총칭

3. 유리병

번호	용어	정의
1	비접착식 라벨	· 라벨을 용기 등에 부착 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유지하는 라벨로서 스트레치 라벨과 슈링크 라벨 등
2	뚜껑데 일체형	·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고 열리는 형태
3	뚜껑데 분리형	·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어 몸체에 테가 남아있는 형태
4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 금속마개 전체를 합성수지로 덧씌운 마개

4.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번호	용어	정의
1	복합재질	· 캔 몸체를 알루미늄과 철 또는 판지 등을 결합하거나, 플라스틱 필름 등을 적층하여 성형한 캔

5.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폴리스티렌페이퍼

번호	용어	정의
1	조합	· 두 개의 다른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6. 페트병

번호	용어	정의
1	복합재질 PET-G	· 페트 재질 외의 합성수지 재질과 복합된 재질 또는 페트 재질과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로서 페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2	열알칼리성 분리	· 기존의 페트수지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투명하고 두꺼운 시트나 용기에 적합하도록 공단량체로 CHDM(1,4-cyclohexanedimethanol)을 첨가하여 공중합한 비결정성 수지
3	접착제	·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4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5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6	음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품안전처, '19.4.26) -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다류, 커피, 과일 ·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 홍삼음료, 기타음료로 분류
7	페트병 면적	· 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병구 및 서포트링 포함)
8	접착제 도포면적	· 제품 생산 · 포장 시 라벨 또는 페트병에 도포되는 접(점)착제의 표면적을 의미

7. 단일재질 용기 · 트레이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번호	용어	정의
1	단일재질	· 몸체가 합성수지 종류 중 하나의 수지로만 구성
2	용기	·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의 총칭
3	트레이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

8.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 및 단일 · 복합재질필름 · 시트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번호	용어	정의
1	복합재질 합성수지	·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함
2	필름	·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 모양인 것
3	시트류	·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인 것
4	병합	·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침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포장과 법률

1.1.1 재활용 우수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몸체에 알루미늄 첩합을 사용한 구조를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1.2.1 육안판정

1.2.1.1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 알루미늄 첩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겉모습 및 제품 단면을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D 1654: 2003 철 및 강 of 형광 엑스선 분석 방법 통칙” 내지 “KS D 1655: 2008 철 및 강 of 형광 X선 분석 방법”에 따른다.

2. 마개 및 잡자재

2.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of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마개 및 잡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렵고,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PE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 of 성형구조물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마개 및 잡자재 중 PE재질 of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 of 10% 이내인 경우이거나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마개 및 잡자재 of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성형구조물 중량 및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 증서류로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성형구조물 중량: 성형구조물 존재 시 $60 \pm 1^\circ\text{C}$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시간 이상 건조 후 무게를 0.01g 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체 중량 비율을 구하여 판정한다.

2.2.2.2 합성수지 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E)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내지 “KS M ISO 11357-1: 2009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1부: 일반 원리” 내지 “KS M ISO 11358-1: 2014 플라스틱-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A)-제2부: 활성화에너지 결정방법”에 따른다.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무색, 갈색, 녹색 색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무색, 갈색, 녹색 색상 이외의 색상이거나, Hot 코팅, Cold 코팅, 플라스틱 코팅을 제외한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한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무색, 갈색, 녹색 색상 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무색”의 경우 $L^* = 77.06$, $a^* = 0.30$, $b^* = 1.32$, “녹색”의 경우 $L^* = 32.26$, $a^* = 21.22$, $b^* = 46.07$, “갈색”의 경우 $L^* = 62.44$, $a^* = -25.68$, $b^* = 26.79$ 에 해당하는 색상



포장과 법률

을 말한다.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정하게 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2 표면코팅 및 도색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1.2.2 기기분석

1.2.2.1 무색, 녹색, 갈색 색상 판정

① $10 \pm 0.1\text{mm}$ 의 평판시편을 제작하여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값이 $L^*=76 \pm 13$, $a^*=0 \pm 2$, $b^*=0 \pm 2$ 이면 “무색”, $L^*=58 \pm 9$, $a^*=-26 \pm 4$, $b^*=27 \pm 4$ 이면 “녹색”, $L^*=33 \pm 11$, $a^*=20 \pm 7$, $b^*=48 \pm 19$ 이면 “갈색”으로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A 0066: 2015 물체색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③ 색상의 표시방법은 “KS A 0067: 2015 $L^* a^* b^*$ 표색계 및 $L^* u^* 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방법”에 따라 $L^* a^* b^*$ 로 표시한다.

1.2.2.2 표면코팅 및 도색 판정 :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종이재질 또는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절취선을 포함한 비점(점)착식 합성수지재질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점(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금속혼입재질, 몸체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를 제외한 직접인쇄인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2.2.1 육안판정

재질(종이, 합성수지, 금속혼입) 및 접(점)착제 사용여부, 절취선 포함여부, 직접인쇄 여부를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2.2.2 기기분석

2.2.2.1 재질 판정

① 종이 판정 : “KS M ISO 5263-1: 201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1부 화학 펄프의 해리” 내지 “KS M ISO 5263-2: 201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2부 20℃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리”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③ 금속혼입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 ②항’을 준용한다.

2.2.2.2 접(점)착제 사용 판정 :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소비자가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거나 몸체와 분리 가능한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소비자가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분리되는 분리형 또는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마개를 제외한 코르크 및 금속성 재질, 기타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판정

3.2.1.1 뚜껑·테 일체형 또는 분리형 판정 : 손으로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붙어 있으면 “뚜껑·테 일체형”으로, 뚜껑과 테가 떨어지면 “뚜껑·테 분리형”으로 판정한다.

3.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분리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3.2.1.3 합성수지 덧씌운 금속 마개 및 코르크 재질은 육안으로 판정한다.

3.2.1.4 금속재질 판정 : 금속재질 여부를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3.2.2 기기분석

3.2.2.1 금속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금속재질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 ②항’을 준용한다.

제3장 금속캔 포장재(철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금속 철캔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금속 재질(철) 판정 : 자석이 몸체에 붙는지 여부를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금속 재질(철)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Fe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 ②항’을 준용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몸체와 동일한 철 재질 또는 알루미늄 재질인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판정

3.2.1.1 금속 재질(철) 판정 : ‘제3장 금속캔 포장재(철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1.1’을 준용한다.

3.2.2 기기분석

3.2.2.1 금속 재질(철, 알루미늄)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Fe,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 ②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포장과 법률

금속 알루미늄캔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재질 이외의 합성수지 등을 포함한 복합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구조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2 알루미늄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금속 재질(알루미늄)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 ②항’을 준용한다.

1.2.2.2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판정: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 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2.2.1.3 알루미늄 재질 여부(몸체와 다른 재질인지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금속 재질(알루미늄) 판정 : ‘제4장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을 준용한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몸체와 동일한 알루미늄인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판정

3.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3.2.1.1 알루미늄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3.2.2 기기분석

2.2.2.1 금속 재질(알루미늄) 판정 : ‘제4장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을 준용한다.

〈다음 호에 계속〉